

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66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: 2024년 2월 27일  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562호)과 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637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수정·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사유

-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·운영·관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5조의3).
- 나.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.

#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) ①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,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,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·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·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) ① 「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

주최하는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,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,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
2. 행사 물품 재사용·재활용,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
3.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
4.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5조의3(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)</u></p> <p>①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,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,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·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·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8조(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)</u> ① 「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,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,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</p> <p>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

1.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
2. 행사 물품 재사용·재활용,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
3.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
4.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 ~ 제10조 (생략)

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